

제 I 편 시설 운영 관리

제 1 장 총 칙

제 1조 (명칭)

- 본 시설을 다사랑실버홈이라 칭한다.(이하 기관이라 칭한다)

제 2조 (사업장)

- 본 기관은 경상북도 상주시 오대동 495-2에 둔다.

제 3조 (적용범위)

- 본 규정은 기관 모든 직원 및 입소자에게 적용하며 임시직원 및 준직원에게 준용한다.

제 2 장 사업 목적 및 내용

제 4조 (사업목적)

- 이 사업은 지역 내 정신적,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~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각종 생활에 도움을 드리며,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.

제 5조 (사업목표)

-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심리적, 신체적,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도모
- 부양가족의 정서적, 신체적,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함으로써 가족의 기능을 회복, 강화하기 위함.
- 지역사회 내 노인 및 가족의 제반 사회문제들을 예방, 해결
- 노인복지 서비스를 실시하여 입소 대상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.
- 노인복지시설 사업을 통해 입소자의 기본적인 욕구 해소

- 입소자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, 다양한 자원의 발굴 및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활동에 힘쓴다.

제 6조 (사업내용)

- 본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.
 1. 입소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지원 및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.
 2.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을 연계하여 봉사 및 지역사회 내의 인적, 물적으로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다.

제 3 장 이용자에 대한 준수 사항

제7조 (입소정원)

- 본 시설의 입소 정원은 42명으로 한다.

제8조 (모집방법)

- 입소자 모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
 1. 관계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입소자를 파악한다.
 2. 기관 소재지 인근에서부터 시 전역에 걸쳐 입소자를 발굴한다.
 3.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, 인터넷 사이트, 관계기관 연계 협력, 지역사회 홍보를 통하여 입소자를 모집한다.
 4. 기관 방문고객이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 입소자를 파악한다.

제9조 (입소정원 및 대상)

-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.
 1.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(이하 “장기요양급여수급자”라 한다)
 2.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
 3.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
 4. 기타 관계 당국의 정원 외 수용 지시에는 예외로 한다.

- 제2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다
- 장기요양급여 등급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

제10조 (계약 기간)

-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 사항에 대해 입소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
-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 단,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.
-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.
-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.

제11조 (계약목적)

- 시설과 이용자(입소자),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- 지역사회와 신체적, 정신적 의존 상태에 있는 노인들의 존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
- 시설과 입소자,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본원에서의 생활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
제12조 (이용계약에 관한 사항)

- 계약 목적: 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, 계약 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 본 기관은 입소자가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

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, 입소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다

- 입소보호 이용계약(서약)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 목적과, 계약 당사자(기관주체, 서비스이용자, 서비스 이용보호자), 인적사항, 계약 기간, 계약의 변경, 계약의 해약 및 종료, 급여비용, 비용수납, 통지할사항, 배상책임보험, 이용규정, 개인정보보호의무, 인수인계원칙, 규정 위조항 및 해석,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
- 계약 기간: 시설 이용 기간은 장기요양 유효기간으로 한다. 단 노인복지법 제 34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에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계약하여야 한다.
- 계약 당사자: 계약은 입소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보호자나 법적대리인과 계약할 수 있다.
- 월 이용료, 기타 비용부담액은 계약서에 명시한다.

제13조 (급여비용/이용료)

-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.
-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. 단,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. 단, 입소보증금은 없다.
-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.
 - 1. 식재료비
 - 2. 이·미용비
 - 3. 기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
- 시설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20%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경감 대상자는 12%, 8%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.
-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

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.

-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-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,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.
-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,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, 간병·수발 등 일상생활지원, 취미, 요양관리, 오락, 운동, 간호, 생활지도, 일상동작훈련, 기능훈련,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며 필요한 기타 복지서비스의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.

제14조 (급여비용청구)
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2, 100분의 8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.
- 단, 동 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.
-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 보험료 없음-식대 및 간식비 제외,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% 경감-식대 및 간식비 제외된다.
-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 수가를 적용한다.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(장기요양급여의 범위)에 의거하여 ‘을’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.

◆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

(단위 : 1일, 원)

등 급	2025년 수가	본인부담금(20%)	본인부담금(12%)	본인부담금(8%)
1	90,450	18,090	10,850	7,240
2	83,910	16,780	10,070	6,710
3,4,5	79,240	15,850	9,510	6,340

제15조 (계약자, 당사자의 의무)

○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.

1. 서비스제공자(이하 “갑”이라 칭함)의 의무

- 입소자(이하 “을”이라 칭함)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(단,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)
- “을”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-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
-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 편의 제공의무
-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
- 기타 “을”의 안락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

2. 입소자의 의무

- 월 이용료 납부 의무
-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
-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-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

3. 보호자(이하 “병”이라 칭함)의 의무

-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
-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
-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-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
-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제

4. 신원인수인의 권리·의무

신원인수방법: 입소보호의 경우 시설내에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① 권 리

- 입소자의 신원확인, 건강상태, 신병 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

-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할 권리
-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
- 시설이 실시하는 상담, 욕구평가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권리
- 입소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
-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,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② 의무

-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의무
-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의무
-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할 의무
-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
-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

5. ‘가’의 계약해지 (기관을 ‘갑’이라 하고 이용자를 ‘을’이라 칭한다.)

① 다음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계약의 해지를 통고한다.

- ‘을’의 생명이 위험 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
- ‘을’의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경우
- ‘을’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기고, 이용신청서 허위사실 기재,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
-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,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
- 이용비용 또는 ‘갑’에게 지불 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
- 이용비용 또는 ‘갑’에게 지불 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 시킴으로써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 서로 간의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‘갑’이 인정할 경우
- 행동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,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

보호가 어려운 경우 보호자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

-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‘갑’이 인정할 경우

-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

•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해제 후에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원인수를 하여야 하며, 불이행 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. (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 시키거나,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)

2. ‘을’의 계약 해제 ‘을’이 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두고 ‘갑’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 일자에 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.

제16조 (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)

-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-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
- 변경 절차는 계약서(표준약관)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, 수급자(보호자)와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-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할 경우
-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
- 급여비용 변경시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서비스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.